



## 섹션 504 비차별 조항 공지

### 규정 안내문

뉴욕시 교육청(DOE)에서는 1973년 재활법 섹션 504(섹션504)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오직 장애를 이유로 DOE에서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소외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비밀보장 규정도 존중될 것입니다.

교육감 규정 [A-710](#)에서는 섹션 504에 정의된 장애가 있어 자격요건이 되는 DOE 학교 및 프로그램 재학생 및 DOE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사람 등을 위한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 DOE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DOE 학생의 DOE 프로그램 및 활동 이용 또는 비 DOE 과외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이메일 [504Questions@schools.nyc.gov](mailto:504Questions@schools.nyc.gov)로 문의하십시오.

교육감 규정 [A-830](#)에서는 직원, 학부모, 학생 및 기타 DOE 대상 사업자, DOE 시설 이용자, 또는 DOE와 기타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불만제기 절차를 포함한 DOE의 반차별 규정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관련된 섹션 504 권리 또는 절차에 관한 문의:

학생 및 학부모님:

Section 504 Program Manager Office of School Health  
42-09 28<sup>th</sup> Street, CN-25  
Queens, NY 11101  
(718) 786-5041  
[504Questions@schools.nyc.gov](mailto:504Questions@schools.nyc.gov)

외부 관련 단체: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32 Old Slip, 26th Floor  
New York, NY 10005-2500  
(646) 428-3900  
<http://www.ed.gov/>

Rev. Sept. 2021

OFFICE OF LEGAL SERVICES • 52 CHAMBERS STREET • RM 308 • NEW YORK, NY 10007  
전화: (212) 374-6888 • Fax (212) 374-5596